



Korean Tax Newsletter

2024년 8월

CONTENTS

세법개정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예규판례

○ 법원

- 본인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 101조 제 1항의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법인의 신청에 따라 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코스닥시장 상장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이 상장 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기획재정부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 '24.1.1 일 이후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적용 여부

○ 국세청

-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 시 증액경정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
-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

세법개정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13.(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전문보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3)
<개정안>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경정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일의 익일로 개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 지방세징수법

-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지방세징수법 §104)
<개정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간 공고 ⇒ 공고 절차 생략
<개정이유>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하고 1개월간 공고 절차는 생략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

■ 지방세법

-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지방세법 §9)
<개정안>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말소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말소등록(단,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개정이유> 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
-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지방세법 §84의5)
<개정안> 신설 1년 이내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공제
<개정이유>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거나 신설 1년 이후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소와 달리, 신설 1년 이내인 사업소는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형평이 있어 신설 1년 이내인 사업소까지 공제 확대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지방세법 §102의2~8 등)
<개정안> 폐지(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 17769 호 부칙 §12)
〈개정안〉 가산세 면제 특례 기한 '24.12.31. ⇒ '26.12.31. 까지로 연장
〈개정이유〉 2021 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전환되면서 납부방식이 종전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되었으나, 납세자 인식 부족으로 가산세 부담 우려
 -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지방세법 시행령 §40)
〈개정안〉 비과세 요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3 조 제 3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 시 폐업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79②)
〈개정안〉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대상에 '어린이집의 경영자' 추가
〈개정이유〉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중 유치원의 경영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영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어린이집의 경영자를 추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영자 간 형평성 제고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지방세법 시행령 §85 의 2②)
〈개정안〉 면세 기준금액 300 만원 ⇒ 360 만원으로 상향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금액이 '19 년에 상향된 이후 물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면세 기준금액 상향 필요
 -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지방세법 시행령 §125)
〈개정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3% ⇒ 5%로 조정
〈개정이유〉 국민 부담을 고려 '25 년 이후부터 3% 공제율 적용 계획을 폐지하고 현행 수준('24 년 5%) 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인이 현물출자 등에 따라 법인전환 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 의 2④)
〈개정안〉
 - (취득세 감면율) 75% ⇒ 50%
 - (일몰기한) '24.12.31 ⇒ '27.12.31.
 - (추징요건) 추징의 예외사유 명확화(추징 요건별 구분)〈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가치 및 조세 합리성 제고
 - 선박의 감면요건 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개정안〉 외항 운송업자 및 선박대여업자가 취득하는 선박도 취득세 감면 후 30 일 내 사업 등록하는 경우 감면
〈개정이유〉 형평성 제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의 명확화(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

〈개정안〉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여부와 상관 없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규정

〈개정이유〉 개별법상 준용규정 없이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적용되도록 용어정의 명확화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3)

〈개정안〉 기존 적용범위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관계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정의 규정 명확화에 따른 개별 근거법령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간 경합문제 해소 필요

예규판례

[법원] 본인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 101 조 제 1 항의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 두 63386 판결, 파기환송)

■ 쟁점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만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 101 조 제 1 항의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 101 조 제 1 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 168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1 조 제 1 항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 101 조 제 5 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98 조 제 1 항은 '구 소득세법 제 101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및 같은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하여 보면,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 101 조 제 1 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관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본인이 아니라 친족관계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4 항 제 1 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함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3 항, 제 4 항에서 정한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특수관계인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법원]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국승)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 두 60745 판결, 파기환송)

■ 쟁점

자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사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6.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12.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3.12. 경 준공인가를 받았음. 이후 원고는 2014.3.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19.4.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음. 피고는 2019.6.3.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

조세심판원은 2020.5.15. 위 두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부산지방법국세청장은 2020.7.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살핀 후, '두 감정가액 모두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하였을 뿐, 재조사 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로 제한하지는 않았음. 부산지방법국세청장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시가 재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고,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을 비롯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였음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 2항 제 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원·피고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두 감정가액 모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 2항 제 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고,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으므로, 부산지방법국세청장 등 관계 행정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 2항 제 2호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이와 달리 부산지방법국세청장 등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하였을 뿐, 후속 처분의 내용을 감액경정으로 제한하지 않았음.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 79 조 제 2 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세액의 경정이 '감액경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 상태로 유지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및 구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원]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법인의 신청에 따라 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 부 3494, 2024.6.19., 경정)

■ 쟁점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법인의 신청에 따라 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 예치되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취급할 것인지, 해당 예탁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

■ 사안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22.6.2.부터 2022.10.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조사대상 기간: 2017~2019 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 국고보조금 수익인식시기에 대한 판정 시 예탁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국고보조금이 이체된 시기로 처리한 것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국고보조금 수익(익금)인식시기에 대한 판정 시 예탁계좌 입금시기를 수익(익금)인식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위탁계좌는 ‘e 나라도움 예탁계좌’라는 명칭의 계좌로서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국가가 소유한 예금계좌이고, 국고보조금은 해당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집행 및 이체를 받는 것으로 예치된 기간의 이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탁계좌의 외관상 계좌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효익 및 통제관리 측면에서 모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예탁계좌에 이체된 국고보조금을 실제 수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을 e 나라도움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등 일련의 추가절차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고보조금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가 아닌 국고보조금이 위탁계좌로 입금된 시기를 그 수익(익금)인식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코스닥시장 상장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이 상장 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 부 7018, 2024.6.19., 기각)

■ 쟁점

(합동)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이 상장 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항공여객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3.20. 임직원들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손금불산입하였고, 임직원들이 2016~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11.6. 코스닥상장 되었음. 청구법인은 2021.5.13. 처분청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 조 제 1 항 제 3 호 나목(이하 “쟁점시행령”) 및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9.4.)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이라 하여 법인세 2016 사업연도분 및 2017 사업연도분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국세청 과세기준자문(기준-2021-법령해석법인-124, 2021.8.12.)을 거쳐 2021.8.25.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 적용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쟁점시행규칙상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의 의미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 19 조 제 19 호 및 제 20 조가 2010.2.18. 대통령령 제 22035 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매수선택권”만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여 “부여”라는 표현만을 사용하다가, 이후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성격의 “주식기준보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과 통칭하여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급”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주식기준보상에 어울리는 표현이 추가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지급한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권리의 행사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동일한 의미의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체결시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주식보상기준”의 “지급”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응되는 표현임을 감안하면, 쟁점시행규칙상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의 의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문언에 충실하고 타당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 조 제 1 항 제 3 호 각 목 외의 괄호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시점과 “행사” 시점의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된 사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이 아닌 부여 또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위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21.2.25. 선고 2020 두 54203 판결 참조),

2018.2.13.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9 호의 2 는 “상법 제 340 조의 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규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 건은 동 규정 전에 행사된 건으로서 그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당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장 이후 행사된 경우 그 차액은 손금산입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 중 1912, 2024.7.8., 취소)

■ 쟁점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청구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업종을 종전 사업지원서비스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한 후 2008~2009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자산총액이 000 원 이상인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중기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의 기준(이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2020 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으로 신고하였음. 청구법인은 다시 그 최다출자자가 자산총액 000 원 미만인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 2021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였고, 2022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중기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규모 기준(이하 “매출액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청구법인은 2022 사업연도에 매출액 규모기준 초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소정의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법인세법」 제 13 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공제신고된 이월결손금 중 000 원을 부인하여 2023.12.4. 청구법인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본문에서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미 2010 사업연도에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2015 사업연도에는 매출액 규모기준도 초과), 2022 사업연도에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22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조특법 시행령 제 2 조의 주요 개정 이력을 보면, 2000.12.29.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유예기간을 “1 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개정되었고, 2010.12.30.에는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일반기업→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잔존 유예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최초로”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2012.2.2.에는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중기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고, 2015.2.3.에는 관계기업 합산매출액 초과시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완화하면서 부칙 제 4 조에서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는 바,

특히 2000.12.29. 및 2010.12.30.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는 종전의 중소기업 졸업횟수, 사유, 유예기간 적용배제와는 무관하게 법인 설립 후 1 회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유예기간의 재차적용은 불허)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본문의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최초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사유(매출액 규모기준 초과 등)가 발생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함(조심 2021 광 3262, 2022.4.25., 조심 2022 중 2851, 2024.2.14.,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 서 9444, 2024.7.9., 취소)

■ 쟁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석유, 천연가스 등 국내외 자원 개발 및 판매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건설·상사·패션·리조트 및 바이오산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년 8월 칠레공화국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인 B(이하 “쟁점해외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등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이하 “쟁점출자전환손실”)을 회계상 손실로 인식하고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2022.3.31. 쟁점해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쟁점출자전환손실을 2016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6~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출자전환손실은 관련 주식을 양도하거나 쟁점해외법인이 청산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3.4.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8.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출자전환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거래이므로, 이 건 주식의 시가를 위 법률 제 5 조에 의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상가액과 채권가액과의 차이인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제 9 조에 따라 익금산입한 후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쟁점해외법인이 청산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위 제9조는 손익인식 시기에 관한 규정이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손익인식 시기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이 건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해 보이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발행가액(채권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손금 내지 익금이 되는데 이에 따른 손익 산입시기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출자전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식의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고, 채권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의 성격보다는 손익거래의 성격이 더 크므로 출자전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청구법인의 2016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출자전환손실은 관련 주식을 양도하거나 쟁점해외법인이 청산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2024.8.19.)

■ 질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 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 조의 4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제 1 안) 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제 2 안) 질의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1 안이 타당함

[기획재정부] ‘24.1.1 일 이후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한국-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2024.8.21.)

■ 질의

내국법인이 대만법인에 대해 ‘24.1.1 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사용료 소득을 ‘24.1.1 일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이 ‘23.12.27 일 발효된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제 28 조 제 2 항 가호에 따라 ‘24.1.1 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영문: amounts payable)에 해당되어 동 약정 제 12 조 제 2 항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대만 거주자인 법인(이하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관련 계약을 ‘24.1.1 일 전에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만법인이 ‘24.1.1 일 이후 내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24.1.1 일 이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별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제 28 조 제 2 항 가호에 따라 약정 제 12 조 제 2 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청]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 시 증액경정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3-법규기본-0106, 2024.5.1.)

■ 질의

내국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로 2016년 발생 미지급비용(3,987백만원)이 2016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후, 2017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 있다가, 과세관청이 위 2017 사업연도 전기 미지급비용 손금산입을 취소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16 사업연도 당기 미지급비용 손금불산입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 (질의 1) 과세관청의 위 2017 사업연도 전기 미지급비용 손금산입 취소가 내국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 사업연도 당기 미지급비용 손금불산입(3,987 백만원)을 취소(감액경정)할 때, 2016 사업연도 전기 미지급비용 손금산입분(= 2015년 발생 비용 3,498 백만원)도 취소(증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갑법인’)은 여객 및 화물운송 등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항공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운송수입(매출액)이 인식된 항공편의 운항에 실제 투입된 재화·용역에 대해 발생한 비용 중에서 거래처와의 정산주기 차이로 인하여 결산시점에 미청구된 금액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금(‘쟁점 미지급비용’, 특정 사업연도 귀속의 쟁점 미지급비용은 ‘쟁점’ 표기 생략)으로 회계처리함

(연도별 재무상태표상 쟁점 미지급비용 계상액(백만원))

구분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미지급비용	2,141	3,498	3,987	5,449

- 한편, 갑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쟁점 미지급비용에 관한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음. 즉, 쟁점 미지급비용은 항행원가에 반영한 각 사업연도(X1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손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갑법인의 회계처리와 동일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기말 재무상태표(X1년)에 계상된 쟁점 미지급비용을 손금불산입하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익년도(X2년)에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 미지급비용은 그에 대응되는 항행원가 결산에 반영된 사업연도(X1년)가 아닌 익년도(X2년)에 손금에 산입됨
- 2023.3월 갑법인은 위와 같은 오류를 이유로 2017년 당기 미지급비용(5,449백만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5월 1차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7년 당기 미지급비용(5,449백만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취소하되, 2017년 전기 미지급비용(= 2016년 당기 미지급비용 3,987백만원) 손금 추인 세무조정도 함께 취소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 이에 갑법인은, 처분청이 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 시 전기 미지급비용 3,987 백만원의 손금 산입을 취소한 결과, 2016 사업연도 당기 미지급비용에 상응하는 항행원가 3,987 백만원이 어떤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3.6월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함

회신

내국법인(‘갑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로 2016년 발생 비용(‘쟁점비용’)이 2016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후 2017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되어 있다가, 과세관청이 위 2017 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을 취소함에 따라 갑법인이 2016 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과세관청의 위 2017 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 취소는 갑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 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을 취소할 때, 2015년 발생 비용의 2016 사업연도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사전-2024-법규법인-0352, 2024.6.13.)

■ 질의

- (질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계열제외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 「법인세법」 제 25 조 제 4 항 제 2 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 (질의 2) <질의 1 에서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 사실관계

- A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1.10.1. B 법인의 건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음
- B 법인은 **법인의 100% 자회사로 분할당시 A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A 법인은 **계열회사에 편입되었고, 2022.3 월, ○○계열회사인 C 법인에 지분 60%를 매각함에 따라 A 법인은 ○○계열회사에도 편입되었음
- A 법인은 2024.3.1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지분매각 사유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았음
- A 법인은 계열분리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 2 조 제 8 항 제 7 호에 따라 **계열사 및 ○○계열사 전체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였고,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발생함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 2 조 제 8 항 제 7 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25 조 제 4 항 제 2 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1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함

[국세청]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7.25.)

■ 질의

내국법인이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2 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 (1 안)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
- (2 안) 기계설비 취득은 재화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투자완료일에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

■ 사실관계

질의법인('A 법인')은 질의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중임

회신

(1 안)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23 조 제 14 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 제 7 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국세청]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서면-2024-법규부가-1732, 2024.8.6.)

■ 질의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식재료 등 과·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23년 8월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멤버스를 도입하여
- 고객이 **멤버스 이용료(1,900 원)를 결제하면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적립금(2,000 원)을 지급하고
- 고객은 **멤버스 이용료 결제 즉시 지급받은 적립금을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용함

회신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